의안번호	2215428
의 뢰 인	김영환 의원
회 답 일	2025. 12. 24.
추계번호	25A7132

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비용추계 결과

❑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서비스산업[1]발전 기본계획 수립, 서비스산업 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7년 1억 5,000만원, 2031년 2,0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2억 3,000만원(연평균 4,6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
○ 제정안의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한정하여 추계한 결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(안 제5조)	130	-	-	-	-	130	26
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설치·운영(안 제9조 및 제10조)	20	20	20	20	20	100	20
합계	150	20	20	20	20	230	46

주: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	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해야 함 ○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산업 발전 정책을 수립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함	의무규정

1) 이 법에 따른 '서비스산업'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「통계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서비스업을 말한다.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2	안 제5조(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	○ 정부는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해야 함	의무 규정
3	안 제6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	○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서비스산업발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해야 함	의무 규정
4	안 제8조(실태조사)	○ 정부는 서비스산업 관련 계획 및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	재량 규정
5	안 제9조 (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 등)	○ 재정경제부에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둠	의무 규정
	안 제10조 (위원회의 구성 등)	○ 위원회는 위원장 2명, 당연직 위원 및 20명 이내의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– 이 경우 위촉위원은 전체 위원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함	
6	안 제11조(실무위원회)	○ 위원회는 위원회 안건의 사전 심의와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음	재량 규정
7	안 제12조(갈등조정기구의 구성 및 운영)	○ 위원회는 서비스산업의 융·복합, 신사업 출현 등에 따라 발생하는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간 갈등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갈등조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음 – 갈등조정기구의 위원은 서비스산업분야 민간 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 – 그 밖에 갈등조정기구의 구성 및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함	재량 규정
8	안 제15조(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)	○ 정부는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○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서비스산업 육성과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	의무 규정
9	안 제16조(서비스산업 우수 연구개발 인증제도)	○ 정부는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발굴하여 인증할 수 있음 ○ 정부는 연구개발 인증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수출과 판로 확대를 위한 자금지원, 세제지원, 구매지원, 포상 등을 할 수 있음	재량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0	안 제17조(서비스산업 연구개발 결과의 보호)	○ 정부는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결과가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지식재산으로서의 권리로 확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	의무규정
11	안 제18조(표준화)	○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 및 서비스의 투명성・전문성 향상을 통한 품질 개선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서비스 표준을 제정하고, 서비스 표준이 산업계 및 관련 기관 등에 체계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	의무규정
12	안 제19조(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및 서비스의 활용 촉진)	○ 정부는 서비스산업 분야에 활용 가능한 정보통신・인공지능・블록체인 및 데이터기술 등과 이를 활용한 서비스의 개발・보급, 관련 표준화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함 ○ 정부는 신기술을 적용한 서비스 우수 활용 사례를 발굴・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	의무규정
13	안 제20조(서비스산업으로의 사업전환 및 다른 산업과의 융·복합 등 지원)	○ 정부는 서비스산업으로의 사업전환, 다른 산업과 서비스산업 및 서비스산업 간 융·복합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음 ○ 서비스 산업의 융·복합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지원 – 국내외 연구기관·대학 및 서비스기업 간의 연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– 다른 산업과 서비스산업 및 서비스산업 간 연구인력의 교류 활성하 – 서비스산업 융・복합 관련 해외 전문인력 유치 – 서비스산업 융・복합 관련 전문인력과 융・복합 연구개발과제 등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등	재량규정
14	안 제21조(서비스산업 융합 연구개발 혁신지원단)	○ 재정경제부장관은 서비스산업의 융・복합 및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및 관련 사업 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비산업 전문연구센터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구기관의 협의체로서 서비스산업 융합 연구개발 혁신지원단을 구성・운영할 수 있음	재량규정
15	안 제22조(서비스 신산업의 창출 촉진)	○ 정부는 위원회의 신기술과 서비스산업의 융합 등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거나 조달기업에 대하여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음 ○ 정부는 시범사업 실시 및 조달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재정적・행정적・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6	안 제24조(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수급동향 조사)	○ 정부는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수급동향에 관해 조사할 수 있음	재량규정
17	안 제25조(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)	○ 정부는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수급동향에 관한 조사를 고려하여 서비스산업 전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산업계・대학・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	재량규정
18	안 제26조(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)	○ 정부는 서비스기업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및 학부의 설치・운영에 관한 서비스산업계의 수요를 매년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계약학과등을 설치・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19	안 제27조(전문인력양성기관)	○ 정부는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의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20	안 제28조(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선정 등)	○ 정부는 서비스산업 부문별 국제경쟁력 평가 등을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을 선정할 수 있음 ○ 정부는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21	안 제29조(창업지원)	○ 정부는 서비스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에 필요한 자금・인력・기술・판로 및 입지 등을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22	안 제30조(세제지원)	○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,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	의무규정
23	안 제31조(서비스 수출 지원)	○ 정부는 서비스 수출 정책을 심의・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서비스산업 수출 정책협의회(이하 “협의회)를 둠	의무규정
24	안 제32조(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의 설치 등)	○ 재정경제부장관은 서비스산업 관련 조사 및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	재량규정
25	안 제33조(서비스산업 인식개선)	○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국민 인식을 높이고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	재량규정
26	제34조(통계의 작성·관리)	○ 정부는 서비스산업 발전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(서비스산업으로의 사업전환, 다른 산업과 서비스산업 및 서비스산업간의 융・복합 관련 통계를 포함한다)를 작성・관리하여야 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재정수반요인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	×	· 선언적·권고적 규정으로 추계 곤란
2	안 제5조(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	○	–
3	안 제6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	×	· 기존 사업 범위내에서 추진 가능
4	안 제8조(실태조사)	×	· 기존 사업 범위내에서 추진 가능 – 기획재정부, 서비스산업실태조사, '25예산안 기준 180백만원 배정
5	안 제9조(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 등)	○	–
6	안 제10조(위원회의 구성 등)		
7	안 제11조(실무위원회)	×	· 선언적·권고적 규정으로 추계 곤란
8	안 제12조(갈등조정기구의 구성 및 운영)	×	· 선언적·권고적 규정으로 추계 곤란
9	안 제15조(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)	×	· 기존 사업 계획에 따라 추진 가능 – 기획재정부, "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" 발표, 2024.11.14. 경제관계장관회의
10	안 제16조(서비스산업 우수 연구개발 인증제도)	×	· 선언적·권고적 규정으로 추계 곤란
11	안 제17조(서비스산업 연구개발 결과의 보호)	×	· 선언적·권고적 규정으로 추계 곤란
12	안 제18조(표준화)	×	· 기존 사업 계획에 따라 추진 가능 – 기획재정부, "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" 발표, 2024.11.14. 경제관계장관회의
13	안 제19조 (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및 서비스의 활용 촉진)	×	
14	안 제20조(서비스산업으로의 사업전환 및 다른 산업과의 융·복합 등 지원)	×	· 선언적·권고적 규정으로 추계 곤란
15	안 제21조(서비스산업 융합연구개발 혁신 지원단)	×	· 선언적·권고적 규정으로 추계 곤란
16	안 제22조(서비스 신사업 창출 촉진)	×	· 선언적·권고적 규정으로 추계 곤란
17	안 제24조(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수급동향 조사)	×	· 기존 사업 범위내에서 추진 가능 – 산업통상자원부,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수급 실태조사(통계청 승인 공식통계, 연간)가 매년 실시 중임
18	안 제25조(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)	×	· 기존 사업 계획에 따라 추진 가능 – 기획재정부, "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" 발표, 2024.11.14. 경제관계장관회의

연번	재정수반요인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9	안 제26조(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)	×	· 선언적·권고적 규정으로 추계 곤란
20	안 제27조(전문인력양성기관)	×	· 선언적·권고적 규정으로 추계 곤란
21	안 제28조(중점 육성 서비스 산업 선정 등)	×	· 선언적·권고적 규정으로 추계 곤란
22	안 제29조(창업지원)	×	· 기존 사업 계획에 따라 추진 가능 – "다자개발은행 조달설명회 개최 등 서비스산업의 조달시장 진출 지원", 기획재정부, "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" 발표, 2024.11.14. 경제관계장관회의
23	안 제30조(세제지원)	×	· 기존 사업 계획에 따라 추진 가능 – 기획재정부, "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" 발표, 2024.11.14. 경제관계장관회의
24	안 제31조(서비스 수출 지원)	×	· 기존 사업 계획에 따라 추진 가능 – 향후 5년('25~'29년) 66조원 규모 서비스산업 수출금융지원 예정 (기획재정부, "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", 2024.11.14. 경제관계장관회의)
25	제32조(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의 설치 등)	×	· 선언적·권고적 규정으로 추계 곤란
26	제33조(서비스산업 인식 개선)	×	· 선언적·권고적 규정으로 추계 곤란
27	제34조(통계의 작성·관리)	×	· 선언적·권고적 규정으로 추계 곤란 – 기존 관련 통계를 활용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 없음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❑ 제정안 중 신설에 해당하는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함에 따라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○ 제정안에서 규정한 기본계획 수립의 경우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

○ 일부 재정수반 요인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하거나, 기존 사업수행 범위 내에서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전제함에 따라 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- 제정안의 일부 재정수반 요인의 경우 선언적·권고적으로 규정된 상황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(사업범위 및 규모, 사업대상 및 방법)을 특정할 수 없어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됨에도 이를 추계에 반영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음
- 한편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 지원을 위한 조직(서비스경제과, 제1차관실)을 두고 관광/보건의료 등 서비스산업 정책 및 서비스산업 통계업무를 수행하고 있음. 제정안의 서비스산업실태조사(매년 정책연구용역 1.8억원 예산편성 중)와 같이 일부 재정수반 요인의 경우 기존 조직과 예산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제

[표 1] 최근 기획재정부 서비스산업 관련 사업추진 경과

연도	사업추진 내용
2021	서비스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및 후속조치 추진
2022	'서비스산업발전TF'(경제부총리 주재, 민간전문가 공동팀장 체제) 구성 및 출범
2023	'서비스산업발전TF'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 산업 고도화 및 경쟁력 제고
2024	제5차 서비스산업발전 TF 회의 개최(2024.12.10.)

자료: 기획재정부,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(Ⅱ-1), 2024.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❑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것을 규정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의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·시행(안 제5조)

❑ 제정안에 따라 정부가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1억 3천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
○ 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인 서비스산업 관련 기본계획(5년 주기) 수립에 소요된 연구용역비의 평균 수준이 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함

[표 1] 제정안과 유사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연구제목	발주처	수행기관	계약연도	금액
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	국토교통부	건축공간연구원	2023	107
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	국토교통부	건축도시공간연구소	2019	88
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	국토교통부	한국교통연구원	2022	196
평균				130

주: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」 제5조에 따른 최상위 법정계획에 해당
자료: 온-나라 정책연구(https://www.prism.go.kr)의 유사 연구용역 사례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[표 2]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
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(안 제5조)	130	-	-	-	-	13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등(안 제9조 및 제10조)

❑ 제정안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연평균 2,0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
○ (구성) 제정안은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위원장 2명, 당연직 위원 및 20명 이내의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35명 이내로 구성할 것을 규정함. 본 추계는 민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민간 위촉위원의 수를 20명으로 가정함

○ (횟수) 제정안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업무수행 범위를 고려할 때 위원회는 연간 분기별 1회씩 총 4회 개최될 것으로 가정

○ (단가) 민간위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수당은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 등을 고려하여 회당 25만원으로 가정하고, 추계기간 동안 고정되어 유지될 것으로 가정

○ (연간 추가 재정소요) 민간위원 20인 × 25만원 × 연 4회 = 2,000만원

❑ 제정안에 따라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1억원(연평균 2,0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3] 제정안의 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설치·운영(안 제9조 및 제10조)	20	20	20	20	20	100	2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Ⅳ. 부대의견

❑ 본 추계는 제정안의 재정수반요인 중 현시점에서 추계가 가능한 일부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Ⅴ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최천규	권아영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천규	02-6788-4653	choi1009@assembly.go.kr